

보도자료



15:00시부터 보도 가능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, 금융감독원 IT감독실						
책 임 자	전요섭 과장(2156-9490) 정인화 실장(3145-7420)		김경수 사무관(2156-9493) 윤택중 부국장(3145-7415)				
배 포 일	2014. 5. 19. (월)		대변인실(2156-9543~48) 공 보 실(3145-5789~92) 총 8매				

<u>제 목 : 온라인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를 위한</u> 「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」개정

Ⅰ 추진 배경

□ 국내외 소비자 편익 증대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온라인 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하는 「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」을 개정

Ⅱ 주요 내용

- □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등^{*}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「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」을 개정하여,
 - *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
 - 신용카드,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시에는 공인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지도록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함
 - 다만,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 계좌이체로 30만원 이상 결제시 현행대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함

「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」개정

현 행	개 정
제4조(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공인인증서 등의 사용 예외) (생략)	제4조(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공인인증서 등의 사용 예외) (현행과 같음)
1.~2. (생략) 3. 전자상거래에서 지급결제로서 <u>30만원</u> 미만의 신용카드 결제 또는 온라인 <u>계좌이체</u>	1.~2. (현행과 같음)3. 전자상거래에서 지급결제로서 <u>신용</u> 카드·직불카드 결제 또는 30만원 미만의 온라인 계좌이체

□ 시행일 : '14.5.20일(화)부터 시행

☞ 개정내용 : 금융감독원(www.fss.or.kr) → 금융법규 → 금융감독법규





[세칙개정 관련 Q&A]

1. Š	향후	온라인쇼핑몰에서	공인인증서가	완전히	없어지는	것인지?
------	----	----------	--------	-----	------	------

- □ 금번 조치는 전자상거래상 공인인증서 사용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,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면제하는 것임
 - 앞으로는 **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(PG)**들이 공인 인증서 사용 여부를 **자율적으로 결정**하게 됨
 - *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보안 또는 인증수단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음
- □ 따라서, 금번 제도개선은 국내에서도 **인증방법을 다양화**하고 금융회사들이 **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**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 의의가 있음

- 2. 외국인의 경우 공인인증서 없이 물품 구매가 가능해지는가?
- □ 외국인의 경우 **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워 국내쇼핑몰에서** 물품을 구매하는데 제약이 있었으나,
 - 금번 조치로 공인인증서 없이도 30만원 이상 물건을 구매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음
- □ 따라서, 외국인이 VISA, Master 등 해외발급 카드로 결제시 동 카드사와 제휴한 국내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물품 구매가 가능

- 3. 전자상거래 외에 자금이체거래(온라인 계좌이체)에는 공인 인증서를 계속 적용하는 이유는?
- □ **전자상거래**의 경우 자금이체거래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서 거래의 **위험도가 낮음**
 - ① 물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거래라는 점에서 자금이체거래와는 성격이 다름
 - ② 물품결제 이후 배송기간(2~3일), 대금지급시점(1개월 가량 소요) 등을 감안할 때 부정결제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사전 인지하여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음
 - ③ 카드결제를 위해서는 ISP안전결제 또는 안심클릭을 통한 본인확인, 전화·SMS를 통한 추가 본인확인(환금성 물품구매시) 등을 거쳐야 함
- □ 반면, 자금이체거래는 실시간으로 즉시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보다 리스크가 크고,
 - 공인인증서 적용 면제로 인한 고객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
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공인인증서 적용을 유지

- 4. 직불카드의 경우에도 온라인 계좌이체와 같이 실시간 계좌 이체가 일어나는데, 온라인 계좌이체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사용토록 하면서 직불카드 사용시에는 이를 면제하는 이유는?
- □ 금번 세칙개정은 전자상거래시 소비자 편익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임
- □ 온라인 계좌이체와 직불카드는 **실시간으로 계좌이체가 일어난다는 점에서는 유사**하나
 - **직불카드는 전자상거래에서 사용**되며 물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라는 자금이체의 원인관계가 있는데 반하여,
 - 온라인 계좌이체는 자금이체의 원인관계 없이도 발생할 수
 있는 등 리스크가 크고, 공인인증서 적용 면제로 인한 고객의
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임

- 5.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카드 부정거래 우려가 크지 않은지?
- □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,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자(PG)들이 다양한 인증방법을 활용하여 보안성을 유지해야 함
 - 카드결제시 ISP 안전결제 또는 안심클릭을 통한 본인확인,
 전화·SMS를 통한 추가 본인확인(환금성 물품 구매시)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부정거래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
 - 금융위·금감원은 **카드부정사용 탐지 및 차단시스템(FDS) 강화, 모니터링 강화** 등 적절한 안전장치를 통해 공인인증서 적용 예외에 따른 보안성을 보완토록 지도할 예정임
- □ 또한,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(PG)는 필요하다면 자율적으로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 가능함

- 6.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제도 전반의 개선 계획 및 공인인증서 이외에 다양한 인증방법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?
- □ 금융위·금감원은 **인증방법 평가기준 개선** 등을 통해 전자 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**다양한 인증방법을 활용**할 수 있도록 **제도개선방안**을 마련할 계획임
 - 아울러 금융회사에 다양한 인증방법의 도입을 적극 안내하고,
 인증방법의 채택 활성화를 유도하여 인증방법 다양화 및
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할 예정이며
 - 이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, 건의사항 등에 대해 **업계(카드사・ PG사 등)・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**하고 **개선사항**에 **반영** 되도록 할 것임